

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25조 제1항제1호			
1)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	200		
2)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		500		
나.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	법 제25조			

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제2항제1호			
1) 취소되거나 중단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	100	100	100
2)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		300	300	300
다.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25조 제1항제2호			
1) 추진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	200	300	500
2)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		500	500	500
라.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25조 제2항제2호			
1)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	100	100	100
2)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		300	300	300
마.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·열람 또는 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	법 제25조 제2항제3호			
1)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	100	200	300
2) 검사·열람 또는 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	300	300	300
3)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		300	300	300